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107793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4. [redacted]시장

5. [redacted]시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참가행정청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10. 10.

판 결 선 고 2019. 12. 1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아래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처분청	경정거부 처분일	귀속 년도	당초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신고액(원)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수정신고액(원)	위 수정신고액에 대한 원고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경정청구액(원)
피고 [redacted]시장	2018. 1. 24.	2014	45,976,010	62,289,180	58,826,090
		2015	95,196,830	112,957,530	110,772,560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8. 1. 30.	2014	16,157,930	21,891,070	20,673,990
		2015	34,364,410	40,869,890[1]	39,986,980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8. 1. 24.	2014	44,439,720	60,207,800	56,860,430
		2015	102,270,490	121,631,110[2]	119,003,590
피고 [redacted]시장	2018. 1. 30.	2015	10,182,060[3]	11,848,010	11,848,010
피고 [redacted]시장	2018. 12. 13.	2014	14,250,320	19,306,600[4]	18,233,210
		2015	53,544,360[5]	63,680,730[6]	62,305,080
		합계	416,382,130	514,681,920	**498,509,940**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참가행정청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1) 원고는 2019.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에서 이 금액을 **40,775,71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40,869,890원의 오기이다(갑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 제9쪽 참조).
2) 원고는 2019.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에서 이 금액을 **121,350,9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121,631,1100원의 오기이다(갑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 제9쪽 참조).
3) 원고는 2019.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에서 이 금액을 뒤에서 보는 기 납부세액 27,890원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10,209,950원**(1원 단위에서 절사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기 납부세액을 뺀 금액인 10,182,060원(1원 단위에서 절사함)의 오기이다(을 제2호증의 5 참조).
4) 원고는 2019.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에서 이 금액을 **18,233,217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19,306,600원의 오기이다(갑 제1호증의 5, 을 제3호증 제9쪽 참조).
5) 원고는 2019.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에서 이 금액을 뒤에서 보는 기 납부세액 146,700원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53,691,062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기 납부세액을 뺀 금액인 53,544,360원(1원 단위에서 절사함)의 오기이다(을 제2호증의 6 참조).
6) 원고는 2019.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에서 이 금액을 **62,305,078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뒤에서 보는 63,680,730원의 오기이다(갑 제1호증의 5, 을 제3호증 제9쪽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인적관계

1) 본점이 국내인 [redacted]구 B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참조)인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자동차 부품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고려될 수 있는(이하 생략한다) 원고 소장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참고].

2) 원고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에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이 정한 외국자회사로 다음 표 기재 각 회사인 [redacted]시에 있는 'C [redacted]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와 [redacted]시(鹽城市)에 있는 'D [redacted]'(이하 'D 공사'라고 한다)를 두고 있고(갑 제2호증의 1 제10쪽, 을 제1호증의 1 제10쪽, 피고들 2019. 3. 20.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7], 위 각 외국자회사가 2014, 2015년도에 중국에서 얻은 소득금액은 같은 표 기재와 같다(을 제1호증의 1 제10쪽, 을 제2호증의 1 제10쪽 참조).

순번	현지법인	원고 회사의 지분율(%)	소득금액(단위: 원)		
			2014년	2015년	합계
1	C 공사	100	15,488,022,165	34,582,890,132	50,070,912,297
2	D 공사	100	9,898,335,299	13,086,672,976	22,985,008,275

7) 원고 회사는 중국 외국자회사로 [redacted]성 [redacted]시에 있는 'E [redacted]'도 두고 있으나, 위 [redacted]는 2014, 2015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상태여서(갑 제2호증의 2 제9쪽 참조)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순번	현지법인	원고 회사의 지분율(%)	소득금액(단위: 원)		
			2014년	2015년	합계
		합계	25,386,357,464	47,669,563,108	73,055,920,572

나. 원고 회사의 외국납부세액

1)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 사이에, 1994. 3. 2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위 협정 중 일부 내용의 대체 및 삭제를 담기 위해 2006. 3. 2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를 각 체결한 바 있다.

2) 원고 회사는 위 각 외국자회사(C, D 각 공사)로부터 배당금과 로열티(Royalty)로 다음 표 기재 돈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외국정부 측'과 같은 방식으로 설시한다)에 해당하는 중국 정부 측이 과세한 세금[8] 즉 외국납부세액을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중국 정부 측에게 지급하였다(갑 제2호증의 1 제36쪽 참조).

귀속년도	지급액(원) (위 각 외국자회사⇒원고 회사)			외국납부세액(원) (원고 회사⇒중국 정부 측)	비고
2014	C 공사	배당금	9,483,174,000	466,564,000	○이 외국납부세액 466,564,000원은 위 배당금 9,483,174,000원의 5%(갑 제2호증의 2 제4쪽, 원고 2019. 1. 7.자 준비서면 제1쪽 참조)에 상당함(1994. 3. 28.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8) 법인세는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로 불리고, '중국 내의 기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조직'은 기업소득세 납세 대상이며,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25%이다(갑 제2호증의 2 제4쪽, 원고 2019. 10. 7.자 준비서면 제27쪽, www.kotra.or.kr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귀속 년도	지급액(원) (위 각 외국자회사⇒원고 회사)			외국납부세액(원) (원고 회사⇒중국 정부 측)	비고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제가호 참조, 이하 이 표에서 생략)
		로열티	3,448,814,000	355,964,000	○이 외국납부세액 355,964,000원은 위 로열티 3,448,814,000원의 10%에 상당함(1994. 3. 28.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제2항 참조, 이하 이 표에서 생략)
	D 공사	배당금	3,358,444,000	166,040,000	○이 외국납부세액 166,040,000원은 위 배당금 3,358,444,000원의 5%에 상당함
		로열티	819,339,000	83,847,000	○이 외국납부세액 83,847,000원은 위 로열티 819,339,000원의 10%에 상당함
			합계	**1,072,415,000**	○을 제1호증의 1 제8쪽, 피고들 2019. 3. 20.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2015	C 공사	배당금	12,737,583,000	634,725,000	○이 외국납부세액 634,725,000원은 위 배당금 12,737,583,000원의 5%에 상당함
		로열티	3,902,529,000	384,939,000	○이 외국납부세액 384,939,000원은 위 로열티 3,902,529,000원의 10%에 상당함
	D 공사	배당금	4,766,802,000	239,699,000	○이 외국납부세액 239,699,000원은 위 배당금 4,766,802,000원의 5%에 상당함
		로열티	639,871,000	64,445,000	○이 외국납부세액 64,445,000원은 위 로열티 639,871,000원의 10%에 상당함
			합계	**1,323,808,000**	○피고들 2019. 3 .20.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이와 같이 원고 회사와 같은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원천소득[9]을 과세표준으로 한

9)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정부 측에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을 이하 '**직접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한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가행정청(이하 '참가행정청'이라고만 한다) 2019. 5. 28.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3) 한편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즉 원고 회사가 중국과 같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이하 '**간주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한다(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참가행정청 2019. 5. 28.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위 '간주 외국납부세액'은 2006. 3. 23.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액'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원고 회사가 2014, 2015년도에 중국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것으로 취급되는 '간주 외국납부세액'은 2014년 632,603,568원이고(을 제1호증의 1 제8쪽 참조) 2015년에는 없다(피고들 2019. 3. 20.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4) 내국법인(원고 회사가 해당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C 공사, D 공사가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고도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위 외국법인세액(즉 해외납부법인세이다)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위 외국법인세액)' 즉 배당소득 비중"에 상당하는 금액은(갑 제2호증의 1 제36, 37쪽 참조), 외국자회사가 외국정부 측에 낸 세금을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간접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취급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와 관련하여 외국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로 보는바(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참조), 이하 이를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라고 한다(참가행정청 2019. 5. 28.자 준비서면 제5쪽 참조).

원고 회사가 2014, 2015년도에 중국에서 발생한 바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것으로 취급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2014년 4,020,759,914원이고(을 제1호증의 1 제8, 10쪽 참조) 2015년 5,457,971,488원이다(갑 제2호증의 1 제36, 37쪽, 피고들 2019. 3. 20.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5) 원고 회사가 2014, 2015년도에 중국에 있는 위 각 외국자회사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부담하였다고 할 수 있는 '총 외국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피고들 2019. 3. 20.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사업연도	항목	액수(단위: 원)	비고
2014	직접 외국납부세액	1,072,415,332	○앞서 본 1,072,415,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임 ○위 1,072,415,000원은 1,00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고 계산된 액수로 보이므로, 이 금액 1,072,415,332원을 이 부분 직접 외국납부세액으로 받아들임(을 제1호증의 1 제8, 9쪽 참조)
	간주 외국납부세액	632,603,568	
	간접 외국납부세액	4,020,759,914	
	합계	5,725,778,814	○을 제1호증의 1 제8쪽, 원고 2019. 1. 7.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2015	직접 외국납부세액	1,323,807,465	○앞서 본 1,323,808,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임 ○위 1,323,808,000원은 1,000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고 계산된 액수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금액 1,323,807,465원을 이 부분 직접 외국납부세액으로 받아들임
	간주 외국납부세액	0	
	간접 외국납부세액	5,457,971,48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사업연도	항목	액수(단위: 원)	비고
	합계	6,781,778,953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이 2015. 2. 3.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한도이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에서 '위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고 개정되어 2015년 사업연도 분부터 시행됨 ○2015년 중국과 관련한 원고 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5,528,984,625원임 ○원고 2019. 1. 7.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다. 원고 회사의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조사로 인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1) 원고 회사는 2015. 3. 22. 관할 세무서에게 사업연도 2014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으로 2015. 2. 3.자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외국납부세액의 전기 이월분 2,740,521,374원과 당기분 위 5,725,778,814원 합계인 8,466,300,188원(= 2,740,521,374원 + 5,725,778,814원) 가운데 일부인 994,438,687원을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즉 2014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7,546,450원을 환급받았다(을 제1호증의 1 제2, 3, 6쪽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항목	원고 회사 신고액(원)	비고
과세표준	6,141,199,181	○내국법인 즉 원고 회사의 2014년 사업연도의 소득 상당액임(법인세법 제13조 참조)
법인세 산출세액	1,208,239,836	○과세표준이 위 6,141,199,181원 즉 61억여 원이므로 당시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면 1,208,239,836원[= 20,000,000원 + (6,141,199,181원 − 200,000,000원) × 20/100, 원 미만 버림]이 산정됨[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참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994,438,687**	○을 제1호증의 1 제2쪽 참조
그 외 감면세액	213,801,149	○을 제1호증의 1 제2, 3쪽 참조
납부할 법인세 세액	0	○위 법인세 산출세액 1,208,239,836원 −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994,438,687원 − 그 외 감면세액 213,801,149원
원천납부한 바 있는 법인세 기 납부액	7,546,450	

2)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사업연도 2014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원고 2019. 1. 7.자 준비서면 제2, 3쪽 참조) 다음과 같이 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였다(을 제1호증의 2 내지 5).

항목	원고 회사 신고액(원)	비고
과세표준	6,141,199,181	○내국법인 즉 원고 회사의 2014년 사업연도의 소득 상당액임(법인세법 제13조 참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도 법인세의 그것과 같이 원고 회사의 2014년도 소득 상당액인 위 6,141,199,18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항목	원고 회사 신고액(원)	비고
		원이라고 전제함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20,823,983	○과세표준이 위 6,141,199,181원 즉 61억여 원이므로 당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120,823,983원[= 2,000,000원 + (6,141,199,181원 − 200,000,000원) × 20/1,000, 원 미만 버림]이 산정됨[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0 참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0	
그 외 감면세액	0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120,823,983**	○위 120,823,983원임(갑 제2호증의 2 제11쪽 참조)

원고 회사는 2015. 4. 20. 피고 경주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위 120,823,983원 즉 120,823,980원(1원 단위를 절삭함)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지방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율에 따라 나누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제12쪽, 을 제1호증 참조).

지방자치단체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분액(원)
피고 아산시장	45,976,010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16,157,930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44,439,720
피고 익산시장	14,250,320
합계	**120,823,980**

3) 이후 원고 회사는 2016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4년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업연도의 소득이 추가로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세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10]를 하고, 그 법인지방소득세를 추납액까지 모두 납부하였다(을 제3호증 제5쪽 참조).

항목	원고 회사의 수정신고액(원)	비고
과세표준	7,829,685,779	○내국법인 즉 원고 회사의 2014년 사업연도의 소득 상당액임(법인세법 제13조 참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도 법인세의 그것과 같이 원고 회사의 2014년도 소득 상당액인 앞서 본 6,141,199,181원에서 증액된 위 7,829,685,779원이라고 전제함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54,593,715	○과세표준이 위 7,829,685,779원 즉 78억여 원이므로 당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154,593,715원 [= 2,000,000원 + (7,829,685,779원 − 200,000,000원) × 20/1,000, 원 미만 버림]이 산정됨[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0 참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0**	
그 외 감면세액	0	
가산세	9,100,942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163,694,657**	○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54,593,715원 + 가산세 9,100,942원 ○이 금액 163,694,657원이 원고 회사가 납부한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임

10) 국세기본법 제45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납부한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위 163,694,657원(추납액 포함) 즉 163,694,650원(1원 단위를 절삭함)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을 제3호증 제9쪽 참조).

순번	지방자치단체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지급액(원)
1	피고 아산시장	62,289,180
2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21,891,070
3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60,207,800
4	피고 익산시장	19,306,600
	합계	**163,694,650**

4) 그 후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사업연도 2014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2017. 12. 12. **경정청구**를 하였다(을 제3호증 제8쪽 참조).

항목	원고 회사의 종전 수정신고액(원)	원고 회사의 경정청구액(원)	비고
과세표준	7,829,685,779	7,829,685,779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54,593,715	154,593,715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0	**154,593,715**	○앞서 본 2016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로 인한 수정신고 추납액 납부 시까지 세액공제 되지 않고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잔액 11,533,308,089원(= 뒤에서 보는 7,471,861,501원 + 6,781,778,953원 − 2,720,332,365원, 을 제3호증 제6쪽 참조) 중 이 액수 154,593,715원만큼을, 원고 회사는 외국납부세액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을 제3호증 제6, 7쪽, 원고 2019. 1. 7.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항목	원고 회사의 종전 수정신고액(원)	원고 회사의 경정청구액(원)	비고
그 외 감면세액	0	0	
가산세	9,100,942	9,100,942	
(차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163,694,657	9,100,942	○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54,593,715원 + 가산세 9,100,942원 = 종전 납부할 세액 163,694,657원 ○위 종전 납부할 세액 163,694,657원 -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위 154,593,715원** = 정당한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9,100,942원 ○원고 회사는 기 납부한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위 163,694,657원이 9,100,942원으로 154,593,715원(= 163,694,657원 - 9,100,942원) 즉 **154,593,720원 상당액만큼 감액 경정 즉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

라. 원고 회사의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무조사로 인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1) 원고는 2016. 3. 25. 관할 세무서에게 사업연도 2015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으로 '세액공제(국가별 공제한도)[11]'를 적용하고, 전기 이월분 7,471,861,501원(= 위 8,466,300,188원 - 994,438,687원) 및 당기 외국납부세액 6,781,778,953원과 국가별 즉 중국에 대한 공제한도 금액 위 5,528,984,625원 중 적은 금액인 위 5,528,984,625원 합계 13,000,846,126원(= 7,471,861,501원 + 5,528,984,625원) 가운데 2,720,332,365원의 세

11) 2015년 사업연도 당시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항에 의하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세액공제 계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액공제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하고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8,099,020원을 환급받았다(을 제2호증의 1 참조).

항목	원고 회사 신고액(원)	비고
과세표준	14,918,396,952	○내국법인 즉 원고 회사의 2015년 사업연도의 소득 상당액임(법인세법 제13조 참조)
법인세 산출세액	2,963,679,390	○과세표준이 위 14,918,396,952원 즉 149억여 원이므로 당시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면 2,963,679,390원[= 20,000,000원 + (14,918,396,952원 − 200,000,000원) × 20/100, 원 미만 버림]이 산정됨[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참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2,720,332,365**	○을 제2호증의 1 제3쪽 참조
그 외 감면세액	243,347,025	○을 제1호증의 1 제2, 3쪽 참조
납부할 법인세 세액	0	○위 법인세 산출세액 2,963,679,390원 −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2,720,332,365원 − 그 외 감면세액 243,347,025원
원천납부한 바 있는 법인세 기 납부액	8,099,020	

2) 원고는 그 무렵 당초 사업연도 2015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계산하였다(을 제2호증의 2 내지 6).

항목	원고 회사 신고액(원)	비고
과세표준	14,918,396,952	○내국법인 즉 원고 회사의 2015년 사업연도의 소득 상당액임(법인세법 제13조 참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항목	원고 회사 신고액(원)	비고
		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도 법인세의 그것과 같이 원고 회사의 2015년도 소득 상당액인 위 14,918,396,952원이라고 전제함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96,367,939	○과세표준이 위 14,918,396,952원 즉 149억여 원이므로 당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296,367,939원[= 2,000,000원 + (14,918,396,952원 − 200,000,000원) × 20/1,000, 원 미만 버림]이 산정됨[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0 참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0	
그 외 감면세액	0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296,367,939	○위 산출세액 296,367,939원임(갑 제2호증의 2 제11쪽 참조)

원고 회사는 2016. 4. 19.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의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위 296,367,939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지방세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율에 따라 나눈 값 즉 안분액에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할 세액'(1원 단위에서 절사하여 총 합계는 295,558,150원이 된다)으로 하여 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제12쪽, 을 제2호증의 2 내지 6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지방자치단체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분액(원)	기 납부세액(원)	납부할 세액(원)	
			전체 액수	1원 단위 절사액
피고 아산시장	95,457,659	260,820	95,196,839	95,196,830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34,458,561	94,150	34,364,411	34,364,410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02,550,701	280,210	102,270,491	102,270,490
피고 경주시장	10,209,956	27,890	10,182,066	10,182,060
피고 익산시장	53,691,062	146,700	53,544,362	53,544,360
합계	296,367,939	809,770	295,558,169	**295,558,150**

3) 이후 원고 회사는 앞서 본 2016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5년 사업연도의 소득도 추가로 있다는 이유로 그 법인세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를 하고, 그 법인지방소득세를 추납액까지 모두 납부하였다(을 제3호증 제5쪽 참조).

항목	원고 회사의 수정신고액(원)	비고
과세표준	17,295,810,850	○내국법인 즉 원고 회사의 2015년 사업연도의 소득 상당액임(법인세법 제13조 참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도 법인세의 그것과 같이 원고 회사의 2015년도 소득 상당액인 앞서 본 14,918,396,952원에서 증액된 위 17,295,810,779원이라고 전제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항목	원고 회사의 수정신고액(원)	비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343,916,217	○과세표준이 위 17,295,810,850원 즉 172억여 원이므로 당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343,916,217원 [= 2,000,000원 + (17,295,810,850원 − 200,000,000원) × 20/1,000, 원 미만 버림]이 산정됨[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0 참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0**	
그 외 감면세액	0	
가산세	7,593,459	
기 납부세액	809,797	○위에서 본 809,770원에 상당하는 금액임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350,699,879**	○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343,916,217원 + 가산세 7,593,459원 − 기 납부세액 809,797원 ○이 금액 350,699,879원이 원고 회사가 납부한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임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납부한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위 350,699,879원(추납액 포함) 즉 그 상당액인 350,987,270원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을 제3호증 제9쪽,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제3, 4쪽 참조).

순번	지방자치단체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지급액(원)
1	피고 아산시장	112,957,530
2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40,869,890
3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21,631,110
4	피고 경주시장	11,848,010
5	피고 익산시장	63,680,730
	합계	**350,987,2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4) 그 후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사업연도 2015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위와 같은 날인 2017. 12. 12. **경정청구**를 2014년도에 대한 그것과 함께 하였다(을 제3호증 제8쪽 참조).

항목	원고 회사의 종전 수정신고액(원)	원고 회사의 경정청구액(원)	비고
과세표준	17,295,810,850	17,295,810,850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343,916,217	343,916,217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0	**343,916,217**	○원고 회사는, 앞서 본 2016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로 인한 수정신고 추납액 납부 시까자 세액공제 되지 않고 이월된 외국납부세액 잔액 11,533,308,089원에서 위 2014년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주장액 154,593,715원을 뺀 잔여액 11,378,714,374원(= 11,533,308,089원 − 154,593,715원) 중 이 액수 343,916,217원만큼을 외국납부세액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을 제3호증 제6, 7쪽, 원고 2019. 1. 7.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그 외 감면세액	0	0	
가산세	7,593,459	7,593,459	
기 납부세액	809,797	809,797	
(차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350,699,879	6,783,662	○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343,916,217원 + 가산세 7,593,459원 − 기 납부세액 809,797원 = 종전 납부할 세액 350,699,879원 ○위 종전 납부할 세액 350,699,879원 −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위 343,916,217원** = 정당한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6,783,662원 ○원고 회사는 기 납부한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항목	원고 회사의 종전 수정신고액(원)	원고 회사의 경정청구액(원)	비고
			세 총액 위 350,699,879원이 6,783,662원으로 343,916,217원(= 350,699,879원 − 6,783,662원) 즉 **343,916,220원**[12] **상당액만큼 감액 경정 즉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

마. 원고 회사의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각 거부처분, 원고 회사의 불복

1) 원고 회사가 2017. 12. 12.자 경정청구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 즉 감액(환급)을 구하는 액수는 다음과 같다(을 제3호증 제9쪽 참조).

순번	피고	2014년도(원)	2015년도(원)	총 합계(원)
1	피고 아산시장	58,826,090	110,772,560	
2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20,673,990	39,986,980	
3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56,860,430	119,003,590	
4	피고 경주시장		11,848,010	
5	피고 익산시장	18,233,210	62,305,080	
	합계	154,593,720	343,916,220	**498,509,940**

2)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2.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달리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불복하며 이 사건 소를

12) 이 금액에 앞서 본 154,593,720원을 더하면 주문 제1항에서 본 498,509,940원이 나온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제기하였다.

순번	처분청	경정거부 처분일	원고 회사의 불복	비고
1	피고 아산시장	2018. 1. 24.	○지방세기본법 제91조가 정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 4. 25. 원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6. 기각 재결이 남 ○원고 회사는 그 재결이 있음을 안 때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90일 이내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함	○갑 제1, 2호증의 1 참조
2	피고 천안시 서북구청장	2018. 1. 30.	○순번 1번의 경우와 같음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참조
3	피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8. 1. 24.	○순번 1번의 경우와 같음	○갑 제1호증의 3(교체된 이후의 것임), 갑 제2호증의 1 참조
4	피고 경주시장	2018. 1. 30.	○순번 1번의 경우와 같음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의 2 참조
5	피고 익산시장	2018. 12. 13.	○원고 회사는 앞서 본 2018.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90일 이내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7. 자 준비서면(제19쪽 참조)을 통하여 이 처분이 이 사건 청구취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갑 제1호증의 5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에서 피고들이 제시한 처분근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갑 제1호증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 과세방법을 법인세 등에 대한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고(갑 제1호증의 5 참조) 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그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열거되어 있지 않음 즉 '외국납부세액 공제감면 규정이 없음'

【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있는 법령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과 관계있는 부분만 적시한다, 이하 같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1994. 3. 28. 북경에서 서명, 1994. 9. 28. 발효)(이하 '한중조세조약'이라고도 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종료

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며, 각 체약국은 발효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개시되는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2006. 3. 23. 베이징에서 서명)(이하 '한중조세조약 의정서'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1994. 3. 28. 북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관련, 다음 규정이 협정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함에 합의한다.

제2조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조세와 관련하여 협정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추가 부과되는 한국의 **농어촌특별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 1. 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세액공제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즉 앞서 본 '**직접 외국납부세액**'이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하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라고 한다)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이다(법인세법 제19조 참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산입하는 방법(이하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이라고 한다)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즉 앞서 본 '**간주 외국납부세액**'이다)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즉 앞서 본 '**간접 외국납부세액**'이다)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2014. 12. 23. 법인세법 개정 전에는 100분의 10이었다) 이상(원고 회사는 앞서 본 중국 소재 외국자회사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 원 초과	39억 8천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백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 원 초과	3억 9천 8백만 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를 정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9.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2015. 12. 29. 이 법이 개정되면서 '조약'이 추가되었다)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2014. 1. 1. 신설된 조항이다)

① 거주자[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개인에 한정된다(소득세법 제1조의2 참조)]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가 빠져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15. 2. 3.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로 개정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만큼 세액공제 되었어야 한다는 주장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위 조약이 정한 이중과세금지가 '직접' 적용되므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잔여 외국납부세액만큼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원고 회사의 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었어야 한다는 주장

법인세법(앞서 본 '구 법인세법'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법인세법'으로 적시한다, 이하 다른 법령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5, 57조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이 '총 외국납부세액'으로서(원고 2019. 7. 17.자 준비서면 제7쪽 각주 3 참조) 세액공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법인세액이 세액공제 되지 않음이 적법하다고 가정할 경우 그때에도 외국법인세액을 원고 회사의 익금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인 소득을 산정한다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한 경우와 대비할 때 과세표준이 외국법인세액의 2배만큼 증가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을 위반한다. 이에 비추어, 외국법인세액이 세액공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의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금액이 동일하지 않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되지 않은 원고 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에 여전히 산입하여 산정한 원고 회사의 소득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적어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과다 산정한 원고 회사의 소득을 기초로 한 부분은(원고 2019. 10. 7.자 준비서면 제30쪽 참조) 위법하므로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만큼 세액공제 되었어야 한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다. 즉, '이중과세'의 조정, 조세 부과에 있어 공제를 두는 경우 이를 무제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사회의 관행, 세율과 같은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입법의 내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 원칙,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 그리고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바12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① 이중과세 회피를 위해 체결된 한중조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 의정서에서 위 각 조약이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조세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더욱이 한중조세조약 제23조와 한중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가 앞서 본 이중과세의 회피방법에 대하여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한국세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세액공제 해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고, ④ 이는 앞서 본 개인지방소득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며(을 제4호증의 2 제3쪽 참조), 그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일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의 앞서 본 외국납부세액만큼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2)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었어야 한다는 주장

가) 앞서 본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즉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액수가 법인세의 그것과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1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소득공제 등을 한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한다.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인 위 소득 즉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익금과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가 된 경우에만 법인의 익금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법 제21조는 직접, 간접, 간주 각 외국납부세액으로 구성되는 외국법인세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즉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의 익금에도 손금에도 산입되지 않는, 과세표준인 법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와 같은 형평을 기하기 위해 법인세법은 앞서 본 제15, 21, 57조와 같은 예외적인 조항들을 두고 있는바 그에 따라, 원고 회사와 같은 납세자는 ㉠ 직접, 간주 각 외국납부세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하거나(이 경우 직접, 간주 각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이 감액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그 외국납부세액 자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고, ㉡ 간접 외국납부세액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하거나(이 경우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앞서 본 익금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산입될 것이다) 그 외국납부세액 자체를 손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감액시킬 수 있다.

즉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는 외국납부세액이 사실상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세액공제' 방법과 포함되지 않는 '손금산입'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다)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앞서 보았듯이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와 같은 납세자는 법인세의 경우와 달리, 직접, 간주 각 외국납부세액은 그 외국납부세액 자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줄이고 간접 외국납부세액도 그 외국납부세액 자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감액시키는 방안만이 남게 된다. 즉 위에서 본 지방세법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금이 그만큼 적게 부과되도록 해주는 것이 앞서 본 법인세법의 적법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 참조).

라) 원고 회사가 기 납부하였다고 할 수 있는 앞서 본 2014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163,694,657원,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350,699,879원 각 상당액은 모두, 원고 회사가 각 법인세 수정신고 시에도 기존 신고 시와 같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이 아닌 세액공제 방법을 따름으로써 외국납부세액 즉 외국법인세액이 '산입'되어 있는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보일 뿐, 피고들과 참가행정청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법인지방소득세의 각 과세표준에 원고 회사의 앞서 본 외국납부세액이 제외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2-03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과세표준에 근거한 것이어서 역시 위법하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다. 중간 결론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피고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절사한 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전후 합계액 액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들과 참가행정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회사에게 부과할 2014, 2015년도 각 법인지방소득세의 피고별 정당한 안분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동희

판사 정문식

판사 함현지